후진하는 지게차와 충돌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직종
충돌	사망 1명	63세	용접공

2022. 00. 00.(수) 경기 소재 사업장 내 지게차가 주물형틀을 싣고 후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와 충돌하여 넘어지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고 다리가 지게차 바퀴에 깔리면서 사망한 재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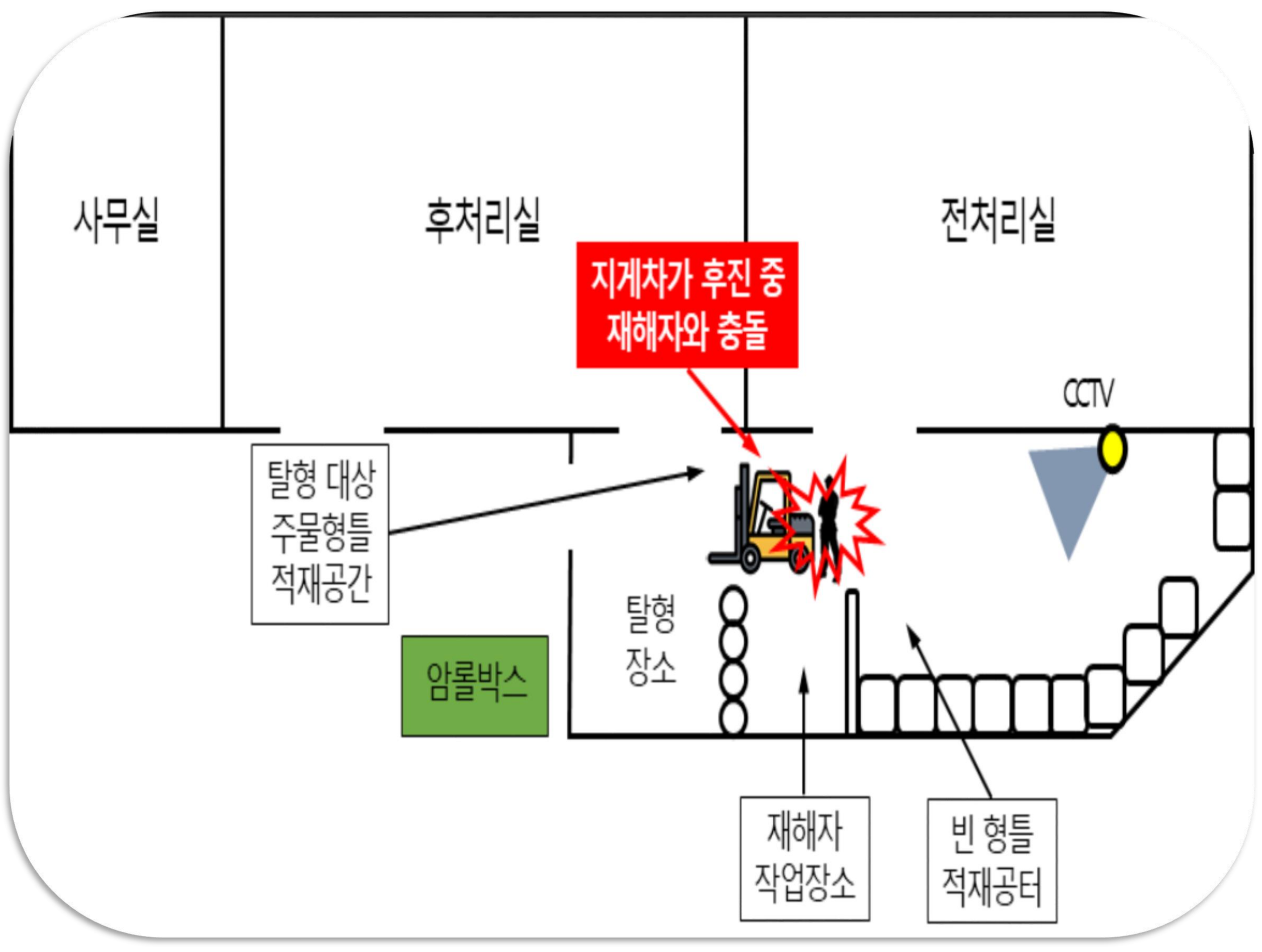

유사사례

2022.10. 경남 소재 OOO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자재 운반 중인 지게차와 충돌 후 지게차 바퀴에 끼여 사망

2015.10. 광주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공장에서 사업장내 도로에서 이동하던 작업자가 운행중인 지게차와 충돌하여 사망

작업상황

- (기게차 후방확인장치) 후진 등 점등 정상, 후진경보기 설치되어 경보음 발생, 경광등 미설치, 전조등 고장
- (기게차 운전석 및 유리) 운전석 등받이 과도하게 젖힌 상태, 안전벨트 사용불가 전후방 유리 오염으로 시야 방해
- (기타) 후미등, 백레스트, 헤드가드, 후사경 정상

예방대책

① 접촉의 방지 조치 철저
- 근로자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 금지하거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후 차량유도

② 지게차 후방충돌 방지조치 실시
- 지게차 후진경보기와 함께 경광등, 후방감지기 등 후방 확인 가능장치를 설치
- 주기적 지게차 전·후면 유리 오염물 등을 제거하여 후사경을 통한 후방시야 확보

③ 안전수칙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
- 지게차 안전수칙 및 올바른 작업방법, 작업현장 상태 등이 반영된 작업계획서 작성 후 작업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

④ 자격을 갖춘 운전자의 지게차 운전
- 보유·사용 중인 지게차 형식 및 용량에 따라 적합한 조종자격을 갖춘 운전자 지게차 운전

⑤ 통로 구분 및 작업공정 재배치
- 후 공정을 위한 지게차의 이동동선과 타 공정의 근로자 이동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의 통로 구분 및 작업공정 재배치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